##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80

발의연월일: 2021. 4. 9.

발 의 자:유기홍·김교흥·김성주

김윤덕 · 김종민 · 양경숙

양정숙 • 윤미향 • 윤준병

이형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과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지급대상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세"를 "18세"로, "매월 10만원을"을 "연령을 고려하여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7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7세</u> 미	지급액) ① <u>18세</u>
만의 아동에게 <u>매월 10만원을</u>	<u>연령을</u> 고려하여
지급한다.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u> </u>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u>7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u>18</u> 4]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②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7세</u>	<u>1</u> 8체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 ④ (생 략)

-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7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③・④ (현행과 같음)
제	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18세</u>
	⑥·⑦ (현행과 같음)
제	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u>1</u>
	8세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2) ~ (4) (여액과 산음)